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939
------	------

발의년월일 : 2020년 10월 16일

발 의 자 : 임종국,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경영, 김경우, 김수규, 김정태, 김제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명화, 송재혁, 오현정, 유 용,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정진술, 채유미, 최 선, 한기영 의원(31명)

1. 제안이유

- 동 조례는 2009년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운영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동 조례의 목적은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재정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비의 배분 등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과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자치구의 재정난으로 인해 인센티브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현상으로 출혈경쟁 심화와 줄세우기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사업 평가 등으로 과도한 업무량 증가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에 요청이 많은 바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시의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센티브)”은 조례의 목적 달성에 미흡하고, 자치구의 과도한 경쟁 유발과 직원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등 부정적 요소와 문제점이 많은 바, 이를 폐지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